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미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 번호 | 385 |
|----------|-----|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31일

발 의 자 : 이승미 의원(1명)

찬 성 자 : 조상호, 정진철, 이영실, 박순규,
송아량, 김제리, 우형찬, 이은주,
이병도, 김상훈 의원 (10명)

1. 제안이유

그간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다른 것을 통일하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부담을 완화하는 등 자전거 주차장 설치시 혼란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대수를 자동차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예산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자전거 주차대수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단,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p> <p>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 는 자전거주차장의 ----- ----- ----- ----- ----- ----- ----- ----- -----.</p> | <p>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 는 자전거주차장의 <u>자전거 주</u> <u>차대수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u> <u>외주차장 자동차 주차대수의 1</u> <u>00분의 40으로 한다. 단, 민간</u> <u>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자</u> <u>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20</u> <u>으로 한다.</u></p> |